포항시 재활용선별장
민간 재위탁·운영 동의(안)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8월 31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9월 1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33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9. 11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지형 자원순환과장)

가. 동의를구하는 사항

○「포항시 재활용선별장」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「포항시 재활용선별장」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제안사유

○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5(호동) 일원에 위치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을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·운영하여 포항시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○ 경제성이 낮은 재활용품에 대한 소극적인 재활용률을 제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활용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 확대

○ 민간의 재활용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기계·장비의 효율적 유지 관리 및 재활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 가능

다. 제안근거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

○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)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○ 「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」 제33조(업무의 위탁)
○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○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(의회 동의)

3. 위탁사무 내용

❍ 재활용선별장의 종합적인 관리·운영
❍ 재활용선별장 건물, 토지, 장비, 부대시설 등 일체 유지 관리
❍ 재활용품 선별・보관 및 처리
❍ 선별 잔재물 처리 및 선별품 판매
❍ 기타 선별장 활성화 및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4. 위탁시설 개요

❍ 시 설 명 : 포항시 재활용선별장
❍ 위　　치 :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5(호동)
❍ 처리용량 : 41.6톤/일(선별 25.6, 증축 16)
■ 재활용시설 : 선별시설 2식, 압축시설 5식, 스티로폼 감용기 1식, 계근대 1식
❍ 공 사 비 : 97억원(국비 27, 도비 8, 시비 62)
❍ 시설면적 : 대지면적 29,325㎡, 건축면적 2,805㎡(연면적 3,182㎡)
❍ 처리공정 : 반입 → 수선별 → 파봉 → 수・기계선별 → 압축(감용) → 저장(출하)
❍ 현　　황

구 분	내　　용
인력현황	39명(사무 8, 현장 29, 경비 2) - 파견 3명 포함
시설현황	파봉기 1대, 비중발리스틱 1대 압축기 5대(다용도 1·캔류 1·플라스틱 2·필름포장재 1) 풍력·자력·광학선별기 각 1대 스티로폼 감용기 1대, 계근대 1대 등
장비현황	중장비/차량 10대(굴삭기 2, 지게차 4, 진개덤프 1, 하이카 2, 일반 1)

5. 민간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(3년)

6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(단위 ::원)

구분		합계	운영원가				민원출동
			소계	기존 선별라인	스티로폼 감용기	추가 선별라인	20회 출동기준
노무비	직접노무비	1,594,451,826	1,591,799,172	1,152,849,120	167,248,336	271,701,716	2,652,654
	간접노무비	261,055,063	261,055,063	189,067,255	27,428,727	44,559,081	-
	소계	**1,855,506,889**	**1,852,854,235**	**1,341,916,375**	**194,677,063**	**316,260,797**	**2,652,654**
경비	보험료	111,130,899	110,856,357	80,918,183	9,945,260	19,992,914	274,542
	복리후생비	109,951,805	109,924,200	77,765,700	11,694,000	20,464,500	27,605
	차량유지비	86,663,050	85,208,426	81,188,900	4,019,526	-	1,454,624
	수리수선비	154,536,644	154,287,530	152,787,530	1,500,000	-	249,114
	소모품비	50,420,000	50,420,000	50,420,000	-	-	-
	지급수수료	25,299,534	25,265,973	25,265,973	-	-	33,561
	용수비	1,870,693	1,870,693	1,870,693	-	-	-
	통신비	1,330,380	1,330,380	1,330,380	-	-	-
	기타경비	38,475,853	38,366,440	27,786,610	4,031,120	6,548,710	109,413
	소계	**579,678,859**	**577,529,999**	**499,333,969**	**31,189,906**	**47,006,124**	**2,148,860**
순원가		**2,435,185,748**	**2,430,384,234**	**1,841,250,344**	**225,866,969**	**363,266,921**	**4,801,514**
일반관리비		146,111,145	145,823,054	110,475,021	13,552,018	21,796,015	288,091
이윤		258,129,690	257,620,730	195,172,537	23,941,899	38,506,294	508,960
총원가		**2,839,426,583**	**2,833,828,018**	**2,146,897,902**	**263,360,886**	**423,569,230**	**5,598,565**
변동비	폐기물 처리비	73,087,000	73,087,000	73,087,000			-
	전력비	104,315,520	104,315,520	104,315,520			-
	계	177,402,520	177,402,520	177,402,520			-
합계		**3,016,829,103**	**3,011,230,538**	**2,324,300,422**	**263,360,886**	**423,569,230**	**5,598,565**
부가가치세		301,682,911	301,123,054	232,430,042	26,336,089	42,356,923	559,857
총계		**3,318,512,014**	**3,312,353,592**	**2,556,730,464**	**289,696,975**	**465,926,153**	**6,158,422**

7. 수탁자 선정방식

○ 위탁방법 : 민간위탁

✤민간위탁 근거 :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(법인·단체·기관에 위임 사무)에 따라 정해진 「**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**」와 「**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**」 제33조 (업무의 위탁) 규정을 적용

○ 위탁시설 : 포항시 재활용선별장

○ 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(3년)

○ 수탁기관 지정

■ 수탁기관 :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

■ 수탁선정 : 공개모집에 따른 위탁자 선정

■ 선정방법 : 모집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→ 제안서 평가 → 수탁기관 선정 → 협상 → 계약체결

8. 적정성 검토결과

○ 검토결과 : 적정

○ 위탁 적정성 검토 : (참고 1)

9. 위탁운영 추진계획

○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: 2026. 10.

○ 민간위탁자 선정 : 2026. 11.

○ 민간위탁 계약 : 2026. 12.

10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장준호)

○ 본 동의안은「포항시 재활용선별장」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「포항시 재활용선별장」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**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,**

「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」 제33조 제2항에 “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재활용시설의 관리 · 운영은 해당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” 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.

○ 또한, **재활용 선별장의 주요업무 및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,**

재활용 선별장은 재활용품의 선별·보관 및 처리, 선별 잔재물 처리 및 선별품 판매, 시설·장비의 유지·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, 재활용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.

○ **검토결과**,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며, 민간위탁 운영 결과 재활용품 선별량 및 매각금 증가 등 유용한 자원의 재활용률 증가추세로 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향후, 운영시 전문적인 선별시설 유지관리와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보장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처리원가 절감과 경영수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·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.

11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12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13. 심사결과 : 원안가결